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145호)
- 송언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440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박희승의원(제2200145호)·송언석의원(제2200440호)

대표발의	1
1. 제안경위	1
가. 박희승의원안	1
나. 송언석의원안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가. 박희승의원안	1
나. 송언석의원안	3
3. 검토의견	4
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인구감소지역 중에서 지정된 혁신도시 우선 고려(박희승의원안 제29조제1항)	4
나. 이전공공기관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 사항 추가 (박희승의원안 제29조의3제2항제5호 신설)	7
다. 혁신도시 내의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건축비 및 운영비 지원 (박희승의원안 제34조·제45조의2, 송언석의원안 제45조의2) ..	9

I. 박희승의원(제2200145호)·송언석의원(제2200440호)

대표발의

1. 제안경위

가. 박희승의원안

- 1) 발 의 자 : 박희승의원 등 23인
- 2) 발 의 일 : 2024. 6. 5.
- 3) 회 부 일 : 2024. 6. 11.

나. 송언석의원안

- 1) 발 의 자 : 송언석의원 등 10인
- 2) 발 의 일 : 2024. 6. 13.
- 3) 회 부 일 : 2024. 6. 1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박희승의원안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은 인구의 절반 이상(50.6%)이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음.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역 간 인구 자연 증감 차이가 아닌, 지역 간 이동에 따른 것으로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이 가장 큰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음.

무엇보다 비정상적인 수준의 ‘수도권 일극체제’는 일자리·문화·의료 등 모든 부문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중대히 저해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혁신도시 외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은 혁신도시로의 이전에 비하여 절차가 복잡하고 정당성 입증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어 역차별의 소지가 있음.

또한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된 기존 10개 혁신도시 외 지방은 구도심 공동화가 심화되는 등 지방도시 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지를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신규로 지정된 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입지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이전공공기관의 균형적 배분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비하고자 함.

아울러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의무 및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입주기관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고 운영비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에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

29조제1항 및 제29조의3제5호 신설 등).

나. 송언석의원안

현행법에서는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등이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면서 의료 수요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에 대한 지원 기준이 현실성이 낮아 현재까지 종합병원 건축비 신청 및 지원이 전무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종합병원 지원 대상을 종합병원의 분원까지 확대하고, 대상지도 산·학·연 클러스터에서 혁신도시 전체로 확대하며, 운영비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 내의 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혁신도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 2).

3.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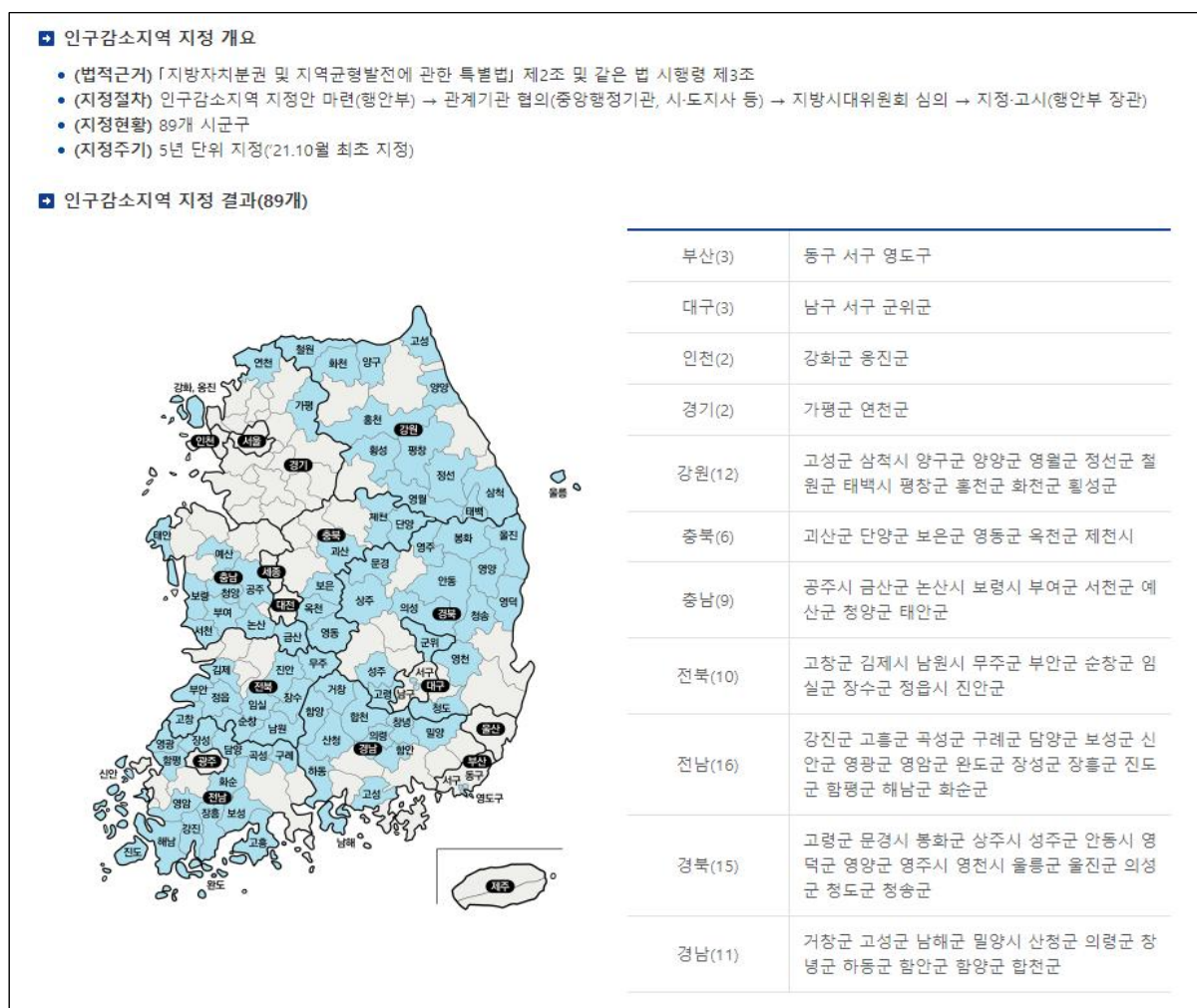
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인구감소지역 중에서 지정된 혁신도시 우선 고려(박희승의원안 제2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	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 -----하며, 이 경우 인구감소지역 중에서 지정된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 ----- -----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지정된 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입지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현재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거주하고 있고, 비수도권 중 상당지역이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개정안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확보하는 등 지방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자료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한편, 같은 혁신도시 권역 내에서도 다양한 지역 간 의견이 있을 수 있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시에도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는
상황으로¹⁾,

개정안의 입법 취지인 수도권 집중현상에 따른 지방도시와의 양극화
해소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²⁾ 및 주민·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겠음.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이전 원칙은 혁신도시와 비
혁신도시(강소지역, 인구감소지역 등)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³⁾하고
있어, 이전 원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할 문제로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
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이하
“도시개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정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기관명	제출의견
경상남도	-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2차 혁신도시가 추가로 형성되어 공공기관이 인구감소지역 에 이전하게 되면 관련 산업의 집적화 및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역 발전 거점을 육성하고자 하는 혁신도시특별법의 취지를 벗어나게 된다고 판단됨
제주도	- 2차 공공기관의 이전은 기반시설이 완성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이전으로 인한 사업비가 절감될 뿐만 아니라 이전기관의 집적에 따른 시너지 효과 및 지역경제 활 성화를 제고할 수 있음 - 따라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현재 조성된 10개 혁신도시에 우선되어야 하며, 저출산 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는 별도의 정책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2023년 전국 혁신도시 협의회 공동성명서(기존 혁신도시로 우선 배치 촉구) 발표(1월, 7월),
2023년 비혁신도시 시군 공동성명서(인구소멸지역으로 이전 촉구) 발표(3월 13개, 5월 18개,
11월 35개 시·군)

나. 이전공공기관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기여 사항 추가
(박희승의원안 제29조의3제2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① (생략)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설></u>	<u>5.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및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u>
5. (생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이전공공기관이 수립하여 시행하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⁴⁾(이하 “지역발전계획”이라 함)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및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① 이전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산업 육성,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2. 지역인재 채용 및 산학협력사업을 포함한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공헌사업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보받은 계획과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⁵⁾하는 것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을 지역발전계획에 포함하도록 명시할 경우 지역 내 소비 진작 등 지역 발전에 효과가 클 수 있음.

한편,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사항은 현행법 제29조의5⁶⁾에서 별도로 구매 촉진 및 실적 통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법 상으로도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일정 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현행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며,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도 우선구매 계획 및 실적으로 지역발전계획에 포함하여 관리 중이므로 개정 실익이 낮다는 의견임.

5)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5(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혁신도시 내의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건축비 및 운영비 지원(박희승의원안 제34조·제45조의2,
 송언석의원안 제45조의2)

현행	박희승의원안	송언석의원안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생략)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현행과 같음)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45조의2에 따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의 시설 <u>건축</u> 에 필요한 비용	8. ----- ----- ----- ----- <u>건축·운영</u> -----	
9. ~ 12. (생략)	9. ~ 12.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산·학·연 클러스터</u> 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u>종합병원</u>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45조의2(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 ----- ----- ----- ----- <u>혁신도시 내</u> ----- ----- ----- -----	제45조의2(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 ----- ----- ----- ----- <u>혁신도시 내</u> ----- ----- ----- <u>종합병원(그 분원을 포함한다)</u> ----- -----

현행	박희승의원안	송언석의원안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대하여 시설의 <u>건축에</u> <u>필요한 비용을</u> 지원할 수 있다.	----- ----- ----- <u>건축·운영</u> <u>에 필요한 비용을</u> ----- ----- -----.	----- ----- ----- <u>건축·운영</u> <u>에 필요한 비용의 전</u> <u>부 또는 일부를</u> ----- -----.

박희승의원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외의 장소에 입주하는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시설의 건축비 외에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송언석의원안은 박희승의원안의 내용에 더불어 지원 대상 중 종합병원의 경우 분원까지도 확대하는 내용임.

현행법에서의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은 혁신도시로의 이전 유인을 통한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서,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혁신도시 계획기준에 따른 산·학·연 클러스터로 범위를 한정하기보다는 혁신도시 전체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혁신도시로의 이전 이후 기관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지

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내용 역시 혁신도시 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 것임.

이와 관련하여 제21대 국회에서도 운영비 지원 규정 신설에 관한 개정안⁷⁾이 발의되었는데, 당시 기획재정부는 혁신도시 입주기업이 부지의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을 받고 건축비까지 지원받는 등 이미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 과도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입주 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이를 고려하여 운영비 지원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재정의 소요 추계와 지원에 따른 효과 등에 대한 연구용역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임.

【 산 · 학 · 연 클러스터 현황('23. 12월 기준) 】

혁신도시	개발면적 (km ²)	클러스터 면적(km ²)	클러스터 비전
대구	4,216	858	안전안심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혁신성장 거점 클러스터
광주 전남 (나주)	7,361	415	호남광역경제권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녹색 성장 거점도시
울산	2,991	141	신산업의 집적지
강원 (원주)	3,585	112	녹색기반의 건강·생명·관광 지식기반 서비스업 “거점도시 건설”

7) 의안번호 210684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혁신도시	개발면적 (km ²)	클러스터 면적(km ²)	클러스터 비전
충북 (진천 · 음성)	6,899	684	지역과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K-City 모델도 시조성(교육·솔라·ICT)
전북 (전주 · 완주)	9,852	227	농생명 혁신거점 혁신도시, 금융·ICT 혁신성 장 전라북도
경북 (김천)	3,812	307	그린에너지· IT 융합·첨단교통·농생명산업 클러스터
경남 (진주)	4,093	216	창조적 혁신으로 융합산업 허브 클러스터 육성
제주 (서귀포)	1,135	151	교육·연수 및 MICE 산업 관광·문화 콘텐츠

*자료: 국토교통부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운영비 지원은 과도한 특혜, 재정 부담 등 관련부처 반대의견을 감안하여 연구·교육 장비 구입, 이전공공기관 연계 공동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추가 지원 항목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81

참고 1

혁신도시 지정 및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비교

구 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근거 법률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5조 ~ 제26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제7조
지정 권자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절차	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도·특별자치도) ↓ 지방시대위 심의·의결 ↓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 관보 고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안)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의견수렴 (주민 의견청취)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협의 ↓ 도시개발위원회 심의·의결 (위원장 : 국토부장관) ↓ 관보 고시 등
지정 내용	1. 혁신도시의 지정 필요성 2.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혁신도시법 제6조)로 지정받으려는 후보 입지 3. 지역산업 발전, 정주여건 개선,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 등 혁신도시의 발전 전략	1.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목적 및 시행자 2.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4. 지형도면 등
비고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해진 혁신도시 내에서 개발계획·실시계획 수립 등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써 사업지구를 지정하는 단계로 혁신도시 지정과 구분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생략)	

참고 2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비교

구 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지정
근거 법률	혁신도시법 제6조 ~ 제7조	혁신도시법 제11조 혁신도시 계획기준(국토부훈령)
지정 권자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승인)
지정 절차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안)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의견수렴 (주민 의견청취) ↓ 관계중앙행정기관장 협의 ↓ 도시개발위원회 심의·의결 (위원장 : 국토부장관) ↓ 관보 고시	혁신도시 개발계획(안) ↓ 혁신도시 개발계획 작성 ☞ 토지이용계획 1. 주택건설용지 2. 상업·업무용지 3. 혁신클러스터 용지 4. 도시지원시설용지 5. 공원 녹지 및 유보지 ☞ 혁신클러스터지구계획 1. 이전공공기관 배치 2. 산·학·연 클러스터 배치 ☞ 교통처리, 주거환경계획 등 ↓ 시도, 시군구 의견수렴 ↓ 관계중앙행정기관장 협의 ↓ 도시개발위원회 심의·의결 ↓ 관보 고시
지정 내용	1.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목적 및 시행자 2.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4. 지형도면 등	1. 혁신도시개발계획 명칭, 예정지구의 위치 면적, 사업 시행자 및 기간 2. 인구수용·토지이용·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3. 교육·문화·체육·보건의료·복지 및 가족친화시설의 설치계획 등
비고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는 혁신도시로 지정된 시·도에서 개발할 시·군·구의 일부를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것이며 · 산·학·연클러스터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개발을 위한 개발계획 작성과 관련 예정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혁신도시 계획기준에 따라 주택용지, 상업·업무용지, 혁신클러스터용지 등으로 계획하고, 혁신클러스터용지는 이전공공기관 용지, 연관산업 등의 유치를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로 나누어 계획하는 것으로 지정의 의미가 아닌 혁신도시개발계획 승인에 포함하여 진행되는 사항	

참고 3

산학연 클러스터 내 종합병원, 연구기관, 대학 건축물 현황

(` 24. 6월 기준)

구분	시·도	시설명	규모	연면적 (㎡)	사업비 (백만원)
종합 병원	대구	화원연세병원	400병상	38,814	56,700
	전남	빛가람병원	220	14,220	22,500
		동신대한방병원		24,454	22,880
	강원	삼산병원	300개이상	11,540.7	17,000
	경남	한일병원	276개	21,798.6	25,399
연구 기관	대구	한국뇌연구원		11,055	27,750
		한의학기술응용센터		6,190	14,801
		실험동물자원은행		3,742	14,400
		(주)오대		1,360	500
	전남	(주)티디엘		2,280	2,410
		실감미디어		4,999	3,822
	울산	한국화학연구원		9,724	36,700
	충북	태양광기술센터		4,933	22,400
		기후환경실증센터		6,554	21,300
		오픈랩차세대 혁신융합센터		3,125.6	21,730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7,506	18,300
	경남	(주)에이엔에이치 스트럭처		6,969	10,000
		(주)악셀		2,413.7	1,300
대학	대구	대구한의대		26,696	51,000
	전북	전주기전대학		1,032	2,315
	경북	경북보건대학		944.5	1,135

* 자료: 국토교통부